학생상담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19.05.22., 개정 2020.04.28., 개정 2022.02.18. 개정 2024.03.01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생상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02.18.>

제2조 (기능) <개정 2022.02.18.>

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및 의결한다.

① 학생상담 운영의 기본계획

② 학생상담의 운영 실적 평가

③ 학생상담의 환류사항

④ 기타 학생상담의 중요 사항

제3조 (구성)

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2.18., 2024.03.01.>

② 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의 추천으로,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2.02.18., 2024.03.01.>

③ 위원회 위원 중 1인은 학생팀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<개정 2020.04.28.>

제4조 (임기)

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시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 <개정 2022.02.18.>

제6조 (회의)

① 위원회의 년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며,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제7조 (간사)

①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<개정 2022.02.18.>

② 간사는 학생상담 담당 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20.04.28. 2022.02.18.>

제9조 (회의록작성)

① 회의록은 위원장의 지시로 간사가 작성한다.
②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한다.

제10조 (경비 등 지원)
①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 (지침)
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2조 (운영세칙)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9.05.22)

제1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4.28)

제1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202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2.18)

제1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3.01)

제1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부터 시행한다.